

[별지 1-1호]

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

제16대 남양주시육상연맹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남양주시 지역거주(주소나 거소, 사업장, 직장)가 아닌 자
2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.군.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.군.구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.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4. 지방자치단체장,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
5. 사회적 물의,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.

2024년 12월 31일

남양주시육상연맹 선거운영위원회 위원

